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2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고동진

주호영 · 강선영 · 유용원

조지연 · 김장겸 · 백종헌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 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 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6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 (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 달하여야 한다.
-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⑧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제5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 달) ① ~ ④ (생 략) 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 년자, 본인의 고용주(雇用主) 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 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 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 령인(受領人)(이하 "세대주등" 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 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한다.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 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7)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

 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

<신 설>

<u>⑥</u>· <u>⑦</u> (생 략)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 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 로 송달할 수 있다.

<u>⑨</u> (생 략)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
여야 한다.
⑧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제5
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
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u>⑨</u> · <u>⑩</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u> </u>

① (현행 제9항과 같음)